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3.23.)

조례안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태정]

목 차

1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3	거창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4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3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6. 3.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6. 3. 14.

2.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기존의 농작물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농작물 ⇒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확대함

나. 산림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신설함(안 제4조)

-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

다. 피해예방시설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10조)

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위임행정규칙) 제18조

나. 예산조치: '16년도 예산 217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완화함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2. 12. ~ 3.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기존의 농작물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7.] [법률 제13882호, 2016.1.27., 일부개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타법개정]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타법개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전문개정 2012.7.27.]

[위임행정규칙]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4.5.1] [환경부고시 제2014-77호, 2014.5.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

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17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

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77호, 2014.5.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절차(제9조 제3항)



① 사업시행 시·군·구 선정(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사업시행 계획, 피해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군·구를 선정

② 사업내용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주요내용, 지원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서 제출(지역주민)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구비서류 : 시설비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④ 지원대상자 선정(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 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통보

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주민)

-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에 따라 자부담금 전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시·군·구에 준공검사를 신청
 - ※ 단,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업체와의 일괄 계약방식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가능

⑥ 사업비 정산·지급(시장·군수·구청장)

-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시설설치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시설업체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정산·지급하되
 - 자부담금 전액이 시설업체에 우선 지급되었는지를 관련 증빙자료(금융거래자료 등)에 의거 확인한 후 지급
 - ※ 이 경우 보조금에 해당하는 자부담 금액이외에 지원대상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 총 비용 2,000만원 중 보조금이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일 경우, 보조금 1,000만원(60%)의 자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670만원(40%)이 우선지급 금액
- 설치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관리번호(년도- 호)를 부여하여 관리

⑦ 시설물의 사후관리(지역주민)

-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
- 농·림·어업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시행(별지 제1호서식)
 -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별지 제2호서식)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9. (생략)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5.24.] [법률 제11429호, 2012.5.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 8. (생략)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15.1.16.] [법률 제12810호, 2014.10.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비료작물·원예작물·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 13. (생략)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3.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3. 14.

2.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염소, 산양, 메추리가 사육대상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포함함(안 별표 1)
 - 염소, 산양: 300미터 이내 사육제한
 - 메추리: 800미터 이내 사육제한
- 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제외되는 소규모 사육두수에 “염소, 산양, 메추리” 추가함(안 제4조)
 - 염소, 산양: 5마리 이하일 때
 - 메추리: 20마리 이하일 때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강화함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2. 3. ~ 2.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염소, 산양, 메추리가 사육대상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젓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 10. (생략)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 5. (생략)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3.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3. 14.

2. 개정이유

- 군 발주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나.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 삭제하여 규제 개선함(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 다. 공사시행의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현행) 군수는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신설)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4.5.2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2. 17. ~ 3.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거창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정과 군 발주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2013.5.22.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4.5.23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마. (생략)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

는 건설기술자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5.19.] [대통령령 제26894호, 2016.1.12., 일부개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별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별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별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별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른다.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6. 3.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6. 3. 14.

2. 폐지이유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 근거인 「기
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8. 3. 28.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 개정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건에 현재까지
해당되지 않아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는 거창군 일반회계가 승계함(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 '08.3.28., 폐지]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2. 3. ~ 2.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 개정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건에 현재까지 해당되지 않아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발췌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3.28.] [법률 제9051호, 2008.3.28.,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051호, 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8.4.18.]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4조(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채납처분 등) ①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분할납부가 인정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 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4.18.]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8., 2008.2.29.>

1. 법 제11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부과(동조제2항에 따른 통지, 동조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면적 중 관할토지면적이 가장 넓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등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물납의 인정 및 징수

4.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 전 징수 및 고지

5. 법 제15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6.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의 부과

7. 법 제17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

8. 법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처분

9. 법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유예

10. 법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 중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분은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하고,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납입 및 물납 실적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에 따른 위임수수료는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일 : 2015.04.29)

(제정) 2006.09.26 조례 제1819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5.04.29 조례 제2244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1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이라 함은 법 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 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기반시 설업무 담당과장, 자금출납원은 기반시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타 조례 개정 2015.4.29.)

제8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및관리)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2.4.] [대통령령 제26691호, 2015.12.4., 일부개정]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